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를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를 “심의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통계관리위원회를”을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역통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하

고, 위원으로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을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실장·국장의”을 “실장·국장·본부장 이상의”으로 한다. 같은항 제3호 전단 중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을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 이상의”으로 하고, 후단 중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을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 이상의”으로 한다.

별표 1 제53호 중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5항 관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3.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4.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6.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7. 「물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8.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9.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1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1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환경계획
12. 「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14.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
16.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17.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9. 「어장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시행계획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2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2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나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별표 2 제3호가목 중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를 “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나목 중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를 “제2호가목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호가목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다.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바.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별표 2 비고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하나의 사업이 위 표 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위 표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그 계획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계획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하지 않은 계획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 20조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계획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대상규모 이상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은 계획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될 경우

4. 위 표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대상규모 이상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될 경우

5.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동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6. 위 표 제3호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text{별표 2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dots$$

7.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④ (생략)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u>위원회의</u> <u>심의를</u> 거쳐 같은 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 ----- ----- ----- ----- <u>심의를</u> -----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④ (생략)	제9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⑤ ~ ⑥과 같음)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생략)

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12명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

③ -----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⑩ (생략)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

-----.

1.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 -----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 ----- ----- ----- ----- -----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4. ----- -----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 ----- -----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 ----- ----- -----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2. -----: ----- ----- -----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략)

----- 실장·국장·
본부장 이상의 -----

3. -----
-----: -----

----- 실장(국장급을 말한다)·
국장 이상의 -----

----- 실장(과장급을 말한
다)·과장·담당관 이상의-----
-----.

② (생략)

[별표 1의2]

행정계획의 종류(제9조제5항 관련)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3.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4.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6.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7. 「물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8.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습지보전실천계획
9.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1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1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환경계획
12. 「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14.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
16.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17.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9. 「어장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시행계획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2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2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2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나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행정계획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가.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자목
나. 수자원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
다. 산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바목 4)는 제외한다)
라.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2)
마.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아목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 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다.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라. 항만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가.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호가목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다.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바.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비고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바목 및 사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하나의 사업이 위 표 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위 표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그 계획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가. 계획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하지 않은 계획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나. 계획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대상규모 이상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은 계획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될 경우
4. 위 표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다.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대상규모 이상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될 경우

5.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동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6. 위 표 제3호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text{별표 2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dots$$

7.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전략과	
연 락 처	(044) 201 - 6978